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04호 2014. 6.27 (금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3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37호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5
○ 하동군 조례 제203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03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하동군 조례 제2040호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041호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13
○ 하동군 조례 제2042호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	22
○ 하동군 조례 제2043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하동군 조례 제2044호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0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9
○ 하동군 규칙 제1104호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30
○ 하동군 규칙 제1105호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31
○ 하동군 규칙 제110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2
○ 하동군 규칙 제110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9
○ 하동군 규칙 제110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 하동군 규칙 제110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3
○ 하동군 규칙 제1110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0
○ 하동군 규칙 제111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77
○ 하동군 규칙 제1112호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33
○ 하동군 규칙 제1113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35
○ 하동군 규칙 제1114호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	140
○ 하동군 규칙 제1115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145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0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3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단서 중 “ 「하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을 ”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으로 하고,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송료 및 숙박비 지급)“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으로 하고, 본문 중 “운송료”를 “운임”으로 한다.

제5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4호 중 “ 「관용차량 관리 규정」 ”을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으로 하
고, “ 「하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을 “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으로 한다.

제6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04 호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운 임				숙박비 (10야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 4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37호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40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3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617명”을 “6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4명”을 “614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6급)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27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59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5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하 동 군 공 보

(8) 제 404 호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기한	비 고
		직 종	직 급			
계	-	-	-	2	-	-
본청	남해안개발과	일반직	5급	1	2015. 6. 30.	6급 정원 환원
	규제개혁추진단	일반직	6급	1	2015. 6. 30.	7급 정원 환원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3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호를 신설한다.

제3조의3(한시기구)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 한시기구로 남해안개발과,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1. 남해안개발과

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업무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 보상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추진단

가.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10) 제 404 호

제9조제2호를 “천부농 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부농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3의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40호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8조제1항 중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를 “포함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통지전에”를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404 호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완료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자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제19조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41호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경비 또는 세입세출예산 자체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군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하 동 군 공 보

(14) 제 404 호

3. 개인, 친목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지원 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 및 신청) ①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심사)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하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통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사회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통보 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사업시행 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체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하 동 군 공 보

(16) 제 404 호

제15조(정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용	분 야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장 소	
	총 소요금액		천원	신청액
			자부담	천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단체의 사회활동 실적(구체적 입증 자료)
3. 그 밖에 참고사항(자기소개서, 단체등록증 사본, 정관 등)

※ 지원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
-
-

4. 세부사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
-

5. 사업비 산출내역

적요(품명)	계	자부담	군비 보조금	산출기준	비고
계					

년 월 일

사회단체명(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및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준비보조	자부담	기 타			산출기초
				소계	기부금	기 타	
계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계좌번호

(은행)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제3호서식】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보고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장 소 :

4. 참여인원 :

5.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년 월 일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 ①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②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 ③ 영수증 사본·세금계산서 각 1부 ④ 사업결과(행사 유인물·사진등) 1부
-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보조사업 추진 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구분	계	군비보조	자체부담	기 타			비고
				소계	기부금	기타	
계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42호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이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지역 범위) 외의 보건기관으로서 보건소와 화개·황천·진교·옥종 보건지소를 말한다.
3. “의약품조제료”란 장애인이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제공받는 의약품 대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 을 구입한 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② 의약품조제료 지원이 가능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관지염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약국에 대하여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감하여 수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의 지원신청자는 의약품조제료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약국이 되며, 해당 약국은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약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품조제료 청구서가 접수 되면 이를 확인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조치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약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조제료를 지원받은 약국의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43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건설위원회 : 남해안개발과, 경제수산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 동 군 공 보

(26) 제 404 호

제5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2044호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8) 제 404 호

[별표 1]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하동군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회장 ○ ○ ○ (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0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능직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0) 제 404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04호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05호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2) 제 404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0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을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수당지급 신청대상”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을 “상위계급 구분”으로 한다.

별표1, 별지 제1호~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하 동 군 공 보

(34) 제 404호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② 전(前) 소속 ③ 공무원 구분 ④ 직급·계급·직무군(호봉)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⑧ 전화번호(주택) ⑨ 근속기간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소속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⑮ 정년잔여기간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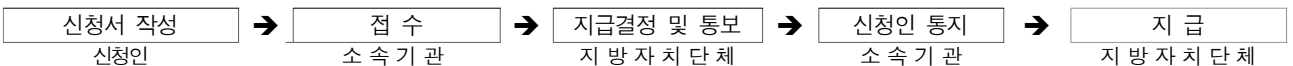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36) 제 404 호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
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일반직(임제 제외) []특정직()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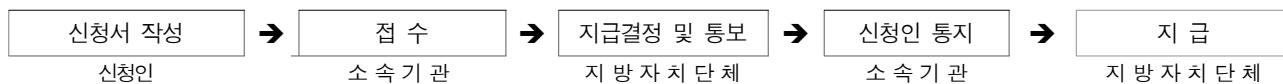
소속기관의 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붉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하 동 군 공 보

(38) 제 404 호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0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매매”를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나목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임

→

파면 - 해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40) 제 404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0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별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7조 중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를 “선발한다”로 한다.

제7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2) 제 404 호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지원서

① 성 명	(한자 :)	②생 년 월 일	⑤ 사 진 3.5×5(cm)	
③ 현주소	(통 반)			
④ 재 적 학 교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	⑦생년월일	⑧ 직업	⑨ 주 소	⑩ 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0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6급)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44) 제 404 호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27	269	68	48	9	23	13	21	176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596	265	68	23	9	23	11	21	176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0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45) 제 40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57	79	12	7	2	3	2	7	45
	행정		14	13	1						
	세무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농업		28	9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3	12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5	2		1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3							1	2	

하 동 군 공 보

(46) 제 40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0	77	19	7	3	5	5	9	55
	행정	19	12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속기	2						2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	4						2	14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하 동 군 공 보

(47) 제 40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8	63	33	3	2		2	3	42	
	행정		14	9					2		3	
	세무		1	1								
	사회복지		8	2						1	5	
	공업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환경		1	1								
	시설		8	4							4	
	시설관리		3	3								
	운전		9	2		1					6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2	5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	3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열관리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하 동 군 공 보

(48) 제 40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73	31	2	2	1	14		1	22
	행정	3	2				1			
	사회복지	16	6							10
	환경	2	2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9	8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4						4			
선박항해운영	1	1								
보건운영	4						4			

하 동 군 공 보

(49) 제 40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 동 군 공 보

(50) 제 404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10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 조제목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본문 중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를 신설한다.

제4조의 조제목과 본문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중 농업정책과장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하 동 군 공 보

(52) 제 404 호

[별표 1]

하동군 본청 실·과·단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 실장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9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0 외국인 등록
	11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2 군민제안
	1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재정조기집행 업무 총괄
	8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9 지방기금 운영 총괄
	10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11 포괄보조사업 총괄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 감사실장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마	슬로시티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전반
	2	힐링시티 업무 전반

하 동 군 공 보

(54)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복지 실장	가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9	웰빙문화교실(취미·기능교실)운영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희망복지지원업무
	2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3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4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5	읍면 종합복지기능 강화 지원
	6	우수프로그램 개발
	7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8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9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10	주민생활 상담실 운영
	11	복지종합상담 창구 운영
	12	행복네트워크 관리
	13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14	긴급복지
	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	푸드뱅크
	17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
	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및 자격관리, 의료급여 자격관리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긴급지원업무 추진
5	이웃 돕기, 후원 결연	

하 동 군 공 보

(55)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복지 실장	6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의료급여사례관리	
	7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8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라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장애아동 조기교육실 운영	
	8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	
	9	장애인등록 및 지원 업무	
	10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1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	
	12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13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14	희망키움 통장 사업	
	마	노인복지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도관리	
	2	노인단체 지원 및 지도육성	
	3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4	경로당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 보건사업 지원	
	6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7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8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관리	
	9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0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11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하 동 군 공 보

(56)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복지 실장	바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4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5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0	여성지위 향상 시책발굴 추진
	11	여성복지시설 운영지도감독
	12	여성단체(여성단체협의회,부인회,적십자부녀봉사회)육성지도
	13	모·부자가정 상담 및 결연 추진
	사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11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지도감독

실과명	분장사무	
민원과장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행정시책 추진
	4	민원 서비스 혁신(G4C)운영
	5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6	하동군민원조정위원회 관리
	7	고객만족도설문조사
	8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나	지적 업무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통계 및 토지소유권 등록사항 정정 업무
	3	지적 측량검사 및 소유권 변동정리
	4	지적 측량에 관한 사무
	5	등기 촉탁(표시변경)
	6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PBLIS)업무
	7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
	8	GPS상시 관측소 관리
	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운영
	10	지적 경계 정비사업
	다	지적 정보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새주소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및 관리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업무
	3	국가지리정보 체계(NGIS)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4	타 정보화 사업과 GIS 연계업무 및 통합 D/B 지원
	5	부동산 거래 업무
	6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련 업무
	7	도면 전산화 사업 및 부동산 실명법 운영
	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5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6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7	토지거래허가 업무

하 동 군 공 보

(58)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가 정원, 인사 및 여론, 동향, 선거,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확정	
	3 공무원시험 및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4 지휘 및 여론, 동향관리	
	5 의전 및 행사	
	6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7 공무원 교육훈련	
	8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9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10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11 국가기반체계 보호	
	12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3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나 공무원단체, 후생 및 후생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관리	
	2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관련 업무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에 관한 사항	
	4 적십자회비 모금	
	5 직장동호회 운영	
	6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7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운영	
	8 공무원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 직장금고 운영	
	11 행정정보 공개운영및 군정기록물 관리	
		다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2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3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5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6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	
	7 회의실 방송장비 총괄 관리	
	8 새울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9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11 IP전화시스템 관리 및 운영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실과명	분장사무
남해안 개발과장	가 남해안시대추진에 관한 사항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관련 업무 총괄
	9 환승주차장 개발업무 추진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5 해양플랜트 R&D
	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2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운영지원
	4 투자유치 타깃기업 관리
	5 개발투자자 발굴 및 유치
	라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금성해안도로(나팔 구간) 개설
	9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10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라 남해안보상에 관한 사항
	1 남해안시대 및 여수세계박람회,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하 동 군 공 보

(60)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관광 과장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9	문화재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11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12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3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14	하동읍성 복원 정비사업
	15	하동송림 생육환경개선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6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	관광진흥 계획수립·조정
	2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관리운영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추진
	4	관광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5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7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8	기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9	관광시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	녹색관광 홍보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4	야생차문화축제 업무 추진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6	관광마케팅 시책업무 추진
	7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8	공동브랜드 관리
	9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전반
	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문전성시 사업 포함)
	4	삼성궁 및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6	취암관댁 운영 및 관리

하 동 군 공 보

(61)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수산 과장	가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 공산품 품질관리
	5 전기사업 및 설비업무에 관한 사항
	6 석유·에너지 관리 업무
	7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동사랑 상품권 관리
	9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1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나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회계 관리
	다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업무
	6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7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8 폐각처리(분쇄기 등)에 관한 사항
	9 연안 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10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11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라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어장관리 지도
	4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5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6 해면 어업허가·신고처분 및 관리
	7 어선등록 및 관리
	8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9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10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11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62)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도시건축 과장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은천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다 디자인에 관한 사항
	1 공공디자인 용역사업 추진
	2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3 각종 사업, 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 적용
	4 디자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디자인 조례·규칙 제정 및 운영
	6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7 경관개선사업추진
	라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
	마 건축 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바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하 동 군 공 보

(63)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재무과장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다	주택 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2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3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4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5	지방세 세무조사
	라	세입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규제)
	2	세외수입원 발굴 및 과징업무 지도감독
	3	국세 관리 및 이체
	4	금고관리 및 수납 대행점 관리
	5	세입정리 및 세입결산
	6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7	체납세 징수
	8	공매의뢰 및 체납처분
	9	결손처분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관리
	5	도·군유 잡종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하 동 군 공 보

(64)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통상교류 과장	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4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5	농특산물의 쇼핑몰 및 각종 판매장 운영
	6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나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원봉사 계획수립 및 시행
	2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
	3	각종 사회봉사단체 관리 및 지원
	4	한마음 사랑나누기
	5	주민소득 지원
	6	대내외 교류 협력업무
	7	자매결연 총괄 계획 및 추진
	다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 개발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공동가공 시설 설치사업
	5	기타 녹차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반사항
	6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상사업
	7	녹차 홈페이지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8	전통 차문화 계승 보급
	9	차 체험관 운영 관리
	10	녹차홍보사업 및 마케팅행사 추진 지원
	11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12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하 동 군 공 보

(65)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산림녹지 과장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농림사업(임업·산촌분야) 취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5	산림분야 종묘업 등록업무
	6	산림분야 공모사업
	7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8	충무계획 관련업무
	9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임업분야 업무
	10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입목벌채 허가, 신고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밤나무 항공방제)
	4	숲 가꾸기 사업(천연림보육,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6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7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8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송림공원관리)
	9	숲길조성 및 관리
	10	백두대간 업무
	다	산림재해에 관한 사항
	1	공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석 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임업진흥촉진지역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8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9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리
	라	녹지공간 조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생활공원조성 및 관리
	2	자연공원 관련업무 전반
	3	가로수 및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4	녹지네트워크(도시림 등) 구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
	5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
	6	학교숲 조성 업무

하 동 군 공 보

(66)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안전총괄 과장	가 안전·재난관리, 민방위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3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
	4 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
	5 예비군육성 지원
	6 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7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8 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9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나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7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사업시행
	8 방재의 날 행사 및 방재 도상훈련
	9 재해 사전대비 업무
	10 풍수해 보험 업무
	다 하천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하천공사 설계 및 감독
	3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5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6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7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8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9 4대강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67)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건설교통 과장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시행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4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5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6 정주권 개발사업
	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 농림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라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하 동 군 공 보

(68)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녹색환경 과장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나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총괄 기획조정
	2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3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
	4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5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6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7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8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다 대기·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1 환경오염 근절대책 추진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
	3 환경오염피해 발생 조정관련 업무
	4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5 생활, 건설 소음진동 규제관련 업무
	6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추진
	7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특정시설 설치신고
	8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9 대기환경 규제 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라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규제개혁 추진단장	가.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하 동 군 공 보

(70) 제 404 호

[별표 2]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보건소장	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 의사 배치·복무 관리
	2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3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의료지원 업무
	9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
	나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1 건강도시사업
	2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지원
	3 국가암 조기검진
	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 지역사회 건강조사
	6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7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 출산장려시책 지원
	8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9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10 저출산 고령화 대책
	11 출산장려시책 지원
	12 33헬스 프로젝트(폐암검진,자궁경부확대촬영사업)
	다 예방의약에 관한 사항
	1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2 의료기관 등 지도 관리 방역소독 사업
	3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4 마약류 지도·관리
	5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
	6 예방접종 사업 및 결핵 관리
	7 신종전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8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전염병 관리 웹 보고
	9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0 결핵관리
	11 장기이식 등록 관리
	12 기생충퇴치사업
	13 성병, 에이즈 등 관리
	14 해하수 관리

하 동 군 공 보

(71)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보건소장	라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1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영양,운동,비만,절주)
	2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전담인력관리)
	3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사업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당뇨,고지혈증)
	6 금연사업(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7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8 모자보건사업
	9 재가장애인 등록 및 재활치료
	10 경로당 방문진료
	1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2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3 치매관리사업
	14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15 노인의치보철사업	
보건소장	마 진료에 관한 사항
	1 건강검진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수입금 관리 등 민원실 운영
	3 성병,에이즈 등 각종 검사관리
	4 건강검진, 민원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7 특수의료장비 관리
8 의료보험보호 청구 업무	
보건소장	라 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하 동 군 공 보

(72)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농업 정책과장	가	농업정책, 농업인 지원 및 농가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서무,문서,관인,보안 및 센터 내 인사관리
	3	농정업무 기획조정
	4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5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6	농림실시계획 및 동원계획 총괄
	7	농림사업 업무 총괄 및 평가
	8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9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10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1	경관보전 직불제
	12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
	13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업무 및 균형발전업무총괄
	15	지방혁신계획수립 및 추진
	16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1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나	부농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1	농업경영 개선지도
	2	농작물별 소득 조사 분석
	3	농업경영 컨설팅
	4	부농 육성사업
	5	FTA 대책 및 지원사업
	6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7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8	농업인정보화사업
	9	지자체협력사업

하 동 군 공 보

(73)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농업정책 과장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봉,토봉산업 육성
	5	기타 가축 육성
	6	축산물 브랜드 육성
	7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및 장비지원
	8	가축시장 관리
	9	초지조성 관리
	10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및 관리
	11	가축통계
	12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3	한우개량 및 등록사업
	14	종축.종돈장 관리
	15	축산재해
	16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재단 운영
	5	축산분뇨 처리사업
	6	양돈 산업 육성
	7	가축병원 지도감독
	8	도축장육가공 관리
	9	정착촌 지도감독
	10	축산물 위생
	11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12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13	축산환경개선

하 동 군 공 보

(74)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사회 과장	가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업인 학습단체 및 후원회 육성 지도
	2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3 최고농업경영자 육성지도
	4 귀농인 관리 및 지도
	5 한국 농업 전문학교 졸업생 관리 지도
	6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7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8 농민회 육성 지도
	9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추진
	10 농업인 교육훈련
	11 과내 일반서무·일상경비·인사 관리
	나 농업지원 및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사항
	1 정부양곡의 보관 및 가공수송
	2 공공비축벼 매입 관리
	3 도정업자 양곡상지도 감독
	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제
	6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7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8 농업 기계화사업
	9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다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관광 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소비자 농업 육성
	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지도
	5 팜스테이 마을 육성 및 관리 지도
	6 과학영농시설 운영
	7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8 살기 좋은 마을(명품 마을) 가꾸기 사업
	라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및 편이장비 보급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도
	6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7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8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관리

하 동 군 공 보

(75) 제 404 호

실과명	분장사무
소득지원 과장	가 친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농업시책
	2 농업기상 및 재해에 관한 기술지도
	3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4 친환경 농업 관리실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
	5 농약 안전사용 및 현장 기술지도
	6 농업재해 기금 운용 관리
	7 식량수급 계획수립
	8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대책
	9 발작물 안전생산
	10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에 관항 사항
	11 고품질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
	12 토양, 물체, 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13 병해충 종합관리(IPM)사업추진 및 기술지도
	14 친환경농업 직불제
	15 고품질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16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지도
	나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농업생산유통과 업무종합 기획조정
	2 채소·화훼 종합계획 및 생산
	3 채소·화훼 등 수출농산물 기술지원
	4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5 수출 농산물 클레임 방지도
	6 수출농단 육성·관리
	7 채소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8 노지채소·산채류 재배 기술지도
	9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10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11 채소분야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2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13 채소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라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과수재해보험
	2 과수·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3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4 과수·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5 과수·특용작물 등 수출농산물 기술지원
	6 과수·특작분야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7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8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하 동 군 공 보

(76) 제 404 호

[별표 5]

읍 · 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하동읍사무소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사무소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옥종면사무소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1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 [별지 제11호 서식] ”을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한다.

제14조 제9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2호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7조 제6항 중 “전직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을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78) 제 404 호

제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별표4,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3, 별표 15,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79) 제 404 호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하 동 군 공 보

(80) 제 404 호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하 동 군 공 보

(82) 제 404 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하 동 군 공 보

(83) 제 404 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하 동 군 공 보

(84) 제 404 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하 동 군 공 보

(85) 제 404 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하 동 군 공 보

(86) 제 404 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 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하 동 군 공 보

(87) 제 404 호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행정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하 동 군 공 보

(88) 제 404 호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하 동 군 공 보

(89) 제 404 호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임상분석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선종양사(12) 임상심리사(12) 간호사(12) 특수 임상심리사(7) 급(7)	임상병리사(8) 임상분석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종양사(8) 임상심리사(8) 간호사(8) 원소취 임상심리사(3) 급(3)	임상병리사(5) 임상분석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종양사(5) 임상심리사(5) 간호사(5) 원소취 임상심리사(3) 급(3)	임상병리사(2) 임상분석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방사선종양사(2) 임상심리사(2) 간호사(2) 원소취 임상심리사(3) 급(3)	임상병리사 임상분석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종양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의사(2)				
		한의사	한의사(2)				
약 무	약 무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 호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 질					
	대 기	대 기					
	폐 기 물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일반항공	운수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기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기용조종사(2) 항공기관사(2) 항공교통관제사(2) 항공정비사(2) 항공운장정비사(2) 운항관리사(2)	
	조 종	조 종	운수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기용조종사(3)	자기용조종사	
	정 비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2) 항공운장정비사(2) 항공기관사(2)	
시 설	건 축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90) 제 404 호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 동 군 공 보

(92) 제 404 호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 동 군 공 보

(93) 제 404 호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직류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하 동 군 공 보

(94) 제 404 호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 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 (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 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 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 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 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하 동 군 공 보

(95) 제 404 호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하 동 군 공 보

(96) 제 404 호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지 도 관	지 도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하 동 군 공 보

(97) 제 404 호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용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작용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하 동 군 공 보

(98) 제 404 호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하 동 군 공 보

(99) 제 404 호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 술 사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1·2급 향해사	1·2급 향해사	3·4급 향해사	5·6급 향해사		
	1·2급 기관사	1·2급 기관사	3·4급 기관사	5·6급 기관사		
선박향해	기술사(조선)	1·2급 향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향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향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 생		위생사	위생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위 생 위 생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하 동 군 공 보

(100) 제 404 호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 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 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 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 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 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 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 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 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 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 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 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 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 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 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 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하 동 군 공 보

(101) 제 404 호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운전	조리 운전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하 동 군 공 보

(102) 제 404 호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자격증	등급	비율	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 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하 동 군 공 보

(104) 제 404 호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하 동 군 공 보

(105) 제 404 호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공 업	<p>기계운전</p>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 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 관리사</p>

하 동 군 공 보

(106) 제 404 호

공 업	조 선	<p>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 료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 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하 동 군 공 보

(107) 제 404 호

공 업	일반화학	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잠 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생 명 유 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하 동 군 공 보

(108) 제 404 호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 업 기 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 업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 업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 업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 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 업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하 동 군 공 보

(109) 제 404 호

보 건	보 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p> <p>기능사 : 식품가공</p> <p style="text-align: center;">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 방사선관리,</p> <p>기사 : 의공</p> <p>산업기사 : 의공</p> <p style="text-align: center;">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p> <p>환경측정분석사 (대가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하 동 군 공 보

(110) 제 404 호

환 경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p> <p>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건축사</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하 동 군 공 보

(111) 제 404 호

시 설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설계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하 동 군 공 보

(112) 제 404 호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 계 농업기계	<p>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유회환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p> <p>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 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자기기</p> <p>기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기 능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p>	

하 동 군 공 보

(113) 제 404 호

공업연구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 염색</p> <p>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화 공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화 학	<p>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p> <p>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물 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p>	
농업 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립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립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하 동 군 공 보

(114) 제 404 호

농업연구	원 예	기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 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 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 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 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근층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 급 자 (일 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사회조 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 생교육사 2급, 산 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하 동 군 공 보

(115) 제 404 호

농업연구	농 공	<p>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p>	
녹지연구	임 업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p> <p>기 을 장 : 산림</p>	
농촌지도	조 경	<p>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p>	
수의연구	수 의	<p>기 술 사 : 축산</p> <p>기 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p>산업기사 : 축산</p> <p>기 능 사 : 축산</p>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p>	
어촌지도	어 촌		

하 동 군 공 보

(116) 제 404 호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수 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 의사, 한 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 의사, 치과의사, 수 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 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 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 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하 동 군 공 보

(117) 제 404 호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설연구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하 동 군 공 보

(118) 제 404 호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야 금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측 지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전송기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약 제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하 동 군 공 보

(119) 제 404 호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하 동 군 공 보

(120) 제 404 호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4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 반 직 공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하 동 군 공 보

(121) 제 404 호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 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 계, 소음진동, 선박건축,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 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 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 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 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 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 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하 동 군 공 보

(122) 제 404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하 동 군 공 보

(123) 제 404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 건 진 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 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하 동 군 공 보

(124) 제 404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건축목공, 목재장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정,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하 동 군 공 보

(125) 제 404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탄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하 동 군 공 보

(126) 제 404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하 동 군 공 보

(127) 제 404 호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하 동 군 공 보

(128) 제 404 호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 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 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 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 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 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 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 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
 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하 동 군 공 보

(129) 제 404 호

[별지 제3호 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 2	선택3	⑥ 가 산 기표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⑧응 시 계 급		급		⑩성명	(한 글)			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렬		(직)			(한 자)			
※응시 번호				⑪ 주민등록 번호					

간

인

⑬응 시 계 급	급	응시원서(부분)		⑱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⑮제 회 시험		
⑭응 시 직 렬		⑯성명		
		(한글)		
		(한자)		
※응시 번호		⑰ 주민등록 번호		

간

인

※	⑲응 시 계 급		급		응 시 표		⑳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㉒제 회 시험		
	⑳응 시 직 렬		(직)		㉓성 명		
㉑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2	선택3	㉔주민등록 번호		
※응시 번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1203 - 1 1A
1978. 10 . 13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120g/m²

하 동 군 공 보

(130) 제 404 호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㉓...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㉔...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 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⑰...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㉕...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㉖...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폴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㉗...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별지 제11호 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보 통	
			미 흡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 위원은 짧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하 동 군 공 보

(132) 제 404 호

[별지 제 12호 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12호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하반기 각 1회”를 “매년 3회로 나누어”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50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중 “사업”을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라, 마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마. 총사업비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자사업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중 “50억원”을 “40억원”으로,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나목의 “시·군”
을 “시·군·구”로 하고, “10억원 이상”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다목의 “사업”을 “사
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군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
는 사업을 포함한다)

하 동 군 공 보

(134) 제 404 호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중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나목의 “사·도”를 “사·군·구”로,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라목의 “사업”을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재해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아. 국가 주관행사로써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9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융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사·도비 등)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6.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 시점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7.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융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8. 당초 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 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13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136) 제 404 호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137) 제 404 호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6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31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 1점)	(2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8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0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22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능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9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하 동 군 공 보

(138) 제 404 호

[별지 제1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금융기관별 점수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			
- 대손충당금적립율 (안정성)	(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급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4)			

20 . . .

심사자 :

위원 (인)

하동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득 점 합계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상태 평가	31								
	- 국외 평가기관	(10)								
	- 국내 평가기관	(6)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4)								
	- BIS 자기자본비율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 대손충당금 적립율	(1)								
2. 자치단체 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8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								
3. 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 리 능력	(7)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4)								

하동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하동군수 귀하

하 동 군 공 보

(140) 제 404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14호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현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군과 군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현장 이행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현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① 현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현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하동군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의 구성) 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 전문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현장 개정 절차) ① 현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현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현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142) 제 404 호

② 현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현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위원회 심의·확정
3. 현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현장의 실천) 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현장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단,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군수는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우리 하동군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과 군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동군의회 및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
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15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의회사무과장은 원활한 개원을 위하여 의원 총선거 후 의원 임기 개시일
전에 의원 등록에 관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안내 할 수 있다

제3조 단서 중 “지역선거구”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20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최초집회)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
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무
과장이 의원임기 개시 일에 소집하도록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 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
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46) 제 404 호

제17조 중 “변경하거나”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86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88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 의2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6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